

The long-awaited BIK rules have arrived ^{P1}

오랫동안 기다려 온 BIK 규칙 시행

재무장관(MoF)은 PMK-66¹을 발행하여 복리 후생("BIK")에 대한 소득세 처리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. PMK-66 은 2023 년 7 월 1 일부터 유효하며 전 직원에게 제공되는 음식 및 음료("F&B")와 특정 지역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BIK 형태로 제공되는 상환 또는 보상과 같이 고용주의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한 PMK-167²을 철회합니다.

PMK-66 에 규정된 일부 조항은 소득세 규정에 관한 최신 사항이 명시된 GR-55³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. 동 TaxFlash 에서는 PMK-66 에 규정된 BIK 관련 추가 세부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.

BIK의 손금 공제 가능성

공제 가능한 BIK 는 다음과 관련된 실비청구항목 및 보상에 해당하는 BIK 입니다.

- 고용주와 직원의 고용 관계
- 납세자 간의 용역 거래

내용 연수가 1 년 미만인 BIK 비용은 해당 비용이 발생한 해에 처리됩니다. 한편 내용 연수가 1 년을 초과하는 혜택(*kenikmatan*) 비용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을 통해 처리됩니다.

¹2023 년 6 월 27 일자 MoF 규정 2023 제 66 호(PMK-66) (2023 년 7 월 1 일부터 시행)

²2018 년 12 월 19 일부터 시행된 MoF 규정 2018 PMK.03 제 167 호(PMK-167)

³2022 년 12 월 20 일부터 시행된 정부 규정 2022 제 55 호(GR-55) GR-55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[TaxFlash 2022 년 제 26 호](#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2022 년에 받은 BIK 의 과세 가능성

BIK 는 일반적으로 HPP 법 ⁴에 따라 2022 년 1 월 1 일(회계 연도(FY) 2022 년이 2022 년 1 월 1 일 이전에 시작된 고용주에 해당)부터 또는 FY 2022 년이 시작될 때(그 외 고용주에 해당) 과세 대상이었습니다. GR-55 에서는 2022 년에 받은 BIK 는 (고용주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은 경우) 직원이 2022 년 연간 소득세 신고서에서 계산, 납부 및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. 그러나 PMK-66 에서는 직원/용역 제공자가 2022 년에 수령한 모든 BIK 는 특정 유형의 비과세 대상 BIK 범주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2023 년 1 월부터 6 월까지 고용주에게 부과된 원천 징수 의무

GR-55 에서는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원천 징수 의무는 2023 년 1 월 1 일부터 받은 BIK 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PMK-66 에서는 2023 년 1 월부터 6 월까지 받은 BIK 에 대해 고용주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은 경우, 직원이 2023 년 연간 소득세 신고서에서 계산, 납부 및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비과세 대상 BIK

앞서 소득세법과 GR-55 에 도입된 비과세 대상 BIK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a) 전 직원에게 제공되는 F&B
- b) 특정 지역의 BIK
- c) 직원이 업무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BIK
- d) 지방/주 정부의 세입 예산에서 제공되는 BIK
- e) 특정 유형 및/또는 금액 제한의 BIK

PMK-66 에는 아래에 명시된 제(a)항, 제(b)항, 제(e)항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. 계산에 예시도 PMK 첨부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a) 전 직원에게 제공되는 F&B

GR-55 에서 동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F&B 형태 중 하나는 마케팅 및 운송 부서 직원 및 기타 외근 직원과 같이 업무 특성으로 인해 직장에서 고용주가 제공하는 F&B 를 이용할 수 없는 직원에게 제공되는 F&B 쿠폰입니다.

PMK-66 에서는 해당 쿠폰을 직원이 미리 부담한 F&B 비용 상환을 포함하여 F&B 로 교환할 수 있는 비현금 거래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비과세 대상 쿠폰 가격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.

- a) 직원당 월별 200 만 루피아 또는
- b) 금액이 직원당 월별 200 만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직장에서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원당 월별 F&B 비용

상기와 같이 실제 쿠폰 가격을 공제한 후의 초과금은 소득세 대상입니다.

b) 특정 지역의 BIK

⁴ 2021 년 10 월 29 일부터 시행된 HPP 법(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/HPP)에 관한 법 2021 제 7 호

특정 저개발 지역("격오지")에서의 BIK 제공은 이전에 PMK-167 에서 규정되었습니다. PMK-66 이 PMK-167 을 철회함에 따라 PMK-167 과 이전 시행 규정(즉, PER-51⁵)에 명시된 대부분의 내용은 일부 최신 사항과 함께 PMK-66 에서 설명됩니다. 격오지에 대한 정의, 비과세 대상 BIK 유형과 격오지로 결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인프라 유형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.

PMK-66 의 추가 설명에 따르면 오지로 확인된 지역에서는 지표로 규정된 인프라 유형 11 개 중 6 개 이상이 이용할 수 없거나 부적합해야 합니다.

PMK-167 에 따라 국세청장(DGT)이 특정 광업 허가증 소지자(광업)와 비광업 납세자에게 각각 10 년 및 5 년의 격오지 승인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. 납세자가 추가로 신청할 경우 해당 승인 기간을 각각 10 년 및 5 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. PMK-66 에 따라 비광업 납세자의 승인 및 연장 절차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. 단, 이제부터 광업 납세자에 대한 승인은 광업 허가증 만료일까지 5 년마다 단계적으로 부여되며, 연장은 납세자가 신청할 필요 없이 DGT 의 직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

경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a) PMK-167 에 따라 내린 기존 격오지 승인은 만료일까지 유효하지만, PMK-66 에 따라 시행됩니다.
- b) 진행 중인 모든 신청(결정 또는 연장)은 PMK-66 에 따라 처리됩니다.
- c) DGT 는 불완전한 신청서에 대한 문서 작성 요청서를 늦어도 2023 년 7 월 15 일까지 보내야 합니다.
- d) 완료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4 개월이 지나도 결정이 나지 않은 신청에 대해서는 늦어도 완료 신청서를 받은 후 6 개월 또는 PMK-66 이 시행된 후 1 개월 중 더 빠른 날짜까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.
- e) 2023 년 7 월 1 일 이후에 만료되는 오지 승인을 받은 특정 광업 허가증 소지자는 늦어도 만료일로부터 4 개월 이전에 연장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

행정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 PMK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e) 특정 유형 및/또는 금액 제한의 BIK

특정 유형/금액 제한의 비과세 대상 BIK 는 PMK-66 부록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

번호	BIK 유형	금액 제한/요구 사항
1	이돌피트리, 크리스마스, <i>네/뽀</i> , 벅삭, 춘절 등 고용주가 종교 명절에 제공하는 선물	전 직원이 받아야 함
2	고용주가 종교 행사 이외의 경우에 제공하는 선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원이 받아야 함; and • 직원당 연간 최대 300 만 루피아 한도

⁵2009 년 9 월 7 일부터 시행된 DGT 규정 2009 PJ 제 PER-51 호(PER-51)

3	컴퓨터, 노트북, 휴대폰과 전화 요금 또는 인터넷 연결과 같은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고용주가 제공하는 업무용 장비 및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원이 받아야 함;and • 직원 업무 지원에 해당하여야 함.
4	고용주가 제공하는 보건 의료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원이 받아야 함;and • 다음과 같은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 제공됨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업무상 사고; 2) 직업상 재해; 3) 응급 상황; 4) 업무상 사고 또는 직업상 재해으로 인한 후속 치료.
5	골프, 경마, 전동 보트 경주, 글라이딩 및/또는 자동차 스포츠 이외에 고용주가 제공하는 스포츠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원이 받아야 함;and • 직원당 연간 최대 150 만 루피아 한도.
6	기숙사, 숙소, 생활관 등 고용주가 제공하는 공동 주거 시설	직원이 받아야 함.
7	아파트/주택을 포함하여 고용주가 제공하는 주거 시설(개인이 사용권을 보유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원이 받아야 함;and • 직원당 월별 최대 200 만 루피아
8	고용주가 제공하는 차량 시설	<p>다음에 해당하는 직원이 받는 경우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용주에 대한 자본 투자 없음 • 고용주로부터 지난 12 개월 동안 얻은 평균 총소득이 월별 최대 1 억 루피아인 경우
9	금융감독청(<i>Otoritas Jasa Keuangan</i>)의 승인을 받은 고용주 부담 연금 기금	직원이 받아야 함.
10	기도실, 모스크, 예배당, 사원 등의 종교 시설	종교 활동 목적으로만 사용됨
11	2022 년에 받은 모든 BIK	직원/용역 제공자가 받음

상기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BIK 가격은 과세 소득이 됩니다.

BIK 에 대한 과세 가액 결정

현물(In-Kind)

제공자가 원래 거래하려고 하는 재화의 형태로 현물(*natura*)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가액은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.

- 토지 및/또는 건물("L&B")의 시장 가치 또는
- L&B 이외의 경우 매출원가로 산정

혜택(Benefit)

혜택의 이용 기간이 1 개월을 넘는 경우 과세 가액은 이용 기간 동안 매월 결정됩니다.

시설/서비스 수혜자가 두 명 이상인 공동 혜택의 경우 과세 가액은 혜택 이용 기록에 따라 각 수혜자에게 비례적으로 할당됩니다.

과세 시점

BIK 에 대한 직원 원천 징수세는 월말에 납부해야 합니다.

- a) 현물의 경우 - 현물을 양도하거나 근로 소득을 얻은 경우 중 더 빠른 시점
- b) 혜택의 경우 - 시설/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또는 그 일부를 양도한 경우

핵심 정보

시행 규칙에 관한 내용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주는 이전에 동 지침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 취한 입장을 평가하고 이를 조정해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. 또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과세 대상 BIK 와 비과세 대상 BIK 를 확인하고 증빙 서류 준비와 과세 가액 계산을 비롯하여 새 규칙을 시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. 무엇보다 직원과의 신중한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.

Your PwC Indonesia Contacts:

Abdullah Azis
abdullah.azis@pwc.com

Hasan Chandra
hasan.chandra@pwc.com

Runi Tusita
runi.tusita@pwc.com

Adi Poernomo
adi.poernomo-c@pwc.com

Hendra Lie
hendra.lie@pwc.com

Ryuji Sugawara
ryuji.sugawara@pwc.com

Adi Pratikto
adi.pratikto@pwc.com

Hyang Augustiana
hyang.augustiana@pwc.com

Soeryo Adjie
soeryo.adjie-c@pwc.com

Adrian Hanif
adrian.hanif@pwc.com

Kianwei Chong
kianwei.chong@pwc.com

Sujadi Lee
sujadi.lee@pwc.com

Alexander Lukito
alexander.lukito@pwc.com

Lukman Budiman
lukman.budiman@pwc.com

Sukma Alam
sukma.alam-c@pwc.com

Ali Widodo
ali.widodo@pwc.com

Made Natawidnyana
made.natawidnyana@pwc.com

Surendro Supriyadi
surendro.supriyadi-c@pwc.com

Andrias Hendrik
andrias.hendrik@pwc.com

Mardianto
mardianto.mardianto-c@pwc.com

Susetiyo Putranto
susetiyo.putranto@pwc.com

Anton Manik
anton.a.manik@pwc.com

Margie Margaret
margie.margaret@pwc.com

Sutrisno Ali
sutrisno.ali-c@pwc.com

Antonius Sanyojaya
antonius.sanyojaya@pwc.com

Marlina Kamal
marlina.kamal@pwc.com

Suyanti Halim
suyanti.halim@pwc.com

Avinash Rao
a.rao@pwc.com

Nicholas Sugito
nicholas.sugito@pwc.com

Tjen She Siung
tjen.she.siung@pwc.com

Ay Tjhing Phan
ay.tjhing.phan@pwc.com

Nikolas Handradjid
nikolas.handradjid@pwc.com

Turino Suyatman
turino.suyatman@pwc.com

Brian Arnold
brian.arnold@pwc.com

Novie Mulyono
novie.mulyono@pwc.com

William Christopher
william.christopher@pwc.com

Dexter Pagayonan
dexter.pagayonan@pwc.com

Oki Octabiyanto
oki.octabiyanto@pwc.com

Yessy Anggraini
yessy.anggraini@pwc.com

Enna Budiman
enna.budiman@pwc.com

Omar Abdulkadir
omar.abdulkadir@pwc.com

Yuliana Kurniadjaja
yuliana.kurniadjaja@pwc.com

Esa Perdana
esa.perdana@pwc.com

Otto Sumaryoto
otto.sumaryoto@pwc.com

Yunita Wahadaniah
yunita.wahadaniah@pwc.com

Gadis Nurhidayah
gadis.nurhidayah@pwc.com

Peter Hohtoulas
peter.hohtoulas@pwc.com

Gerardus Mahendra
gerardus.mahendra@pwc.com

Raemon Utama
raemon.utama@pwc.com

www.pwc.com/id



PwC Indonesia



@PwC_Indonesia

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,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,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@pwc.com.

DISCLAIMER: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.

© 2023 PT Prima Wahana Caraka. All rights reserved.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,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.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. Please see www.pwc.com/structure for further details.

